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에 대한 기본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보험가입대상, 보상범위, 보험료 납입방법(안 제3조~제5조)
- 피해신고, 보험료 청구, 보험금액 산정(안 제6조~제8조)
- 보험금 지급, 지급제외 규정(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구미시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난·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청구·산정·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그 외에도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보험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 보험금 지급제외 조항을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의무뿐만 아니라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발생의 불예측성을 고려할 때 시민안전보험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험의 특성상 보장 확대는 시민의 혜택은 커지지만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장 축소는 보험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보험 계약 시 담보별 보장내용 등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에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장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다만, 「상법」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더라도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을 제외한 상해후유장해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상북도에서도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전국 132개,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도내 조례 제정 시군: 포항, 경주, 영주, 문경, 청송, 청도, 예천, 울진, 김천, 영덕